

## 해양·수산관련 법령 제·개정 주요내용(2013년 상반기)

### 1.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

#### ■ 국토해양부령 제564호, 2013. 01. 23

- 산적하여 운송되는 액체위험물 중 인화성 액체 물질에 기름을 포함하고, 유(油)탱커 밀폐 구역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여 기름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재 및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2012년 1월 1일 발효된 「국제해상 위험물규칙」(IMDG CODE)의 개정내용을 수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위험물운송적합증 신규 및 변경 발급 처리 기간 연장(즉시 → 3일)
- 유(油)탱커 밀폐구역에 대한 출입 제한요건 신설

- 이송, 통풍장치
- 화재안전 기준
  - 제3장(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화재예방, 화재진압, 화재탐지·경보장치
- 전기설비 기준
  - 제4장(제19조) : 전기설비 일반
- 제어, 감시 및 안전장치 기준
  - 제5장(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 가스탱크 감시, 가스압축기감시, 가스연료기관감시, 가스탐지, 가스공급 장치의 안전기능
- 압축기 및 가스기관 기준
  - 제6장(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 가스압축기, 가스기관설계, 이중연료기관, 가스기관
- 제조 및 시험 기준
  - 제7장(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 가스탱크, 가스관장치, 통풍설비, 밸브장치, 팽창신축관 장치, 가스연료펌프

### 2. 가스연료 추진선박기준 제정

####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4호, 2013. 01. 23

-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건조기준 제정으로 관련 선박의 건조 및 운항 안전 확보 하고자 함
- 배치 및 시스템 설계 기준
  - 제2장(제5조부터 제14조까지) : 재료, 구역 분리·배치, 출입구·개구배치, 배관설계, 장치 구성, 가스공급, 가스연료저장, 연료수급·

### 3.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 대통령령 제24353호, 2013. 02. 13

-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수산자원 평가 결과 수산자원량 대비 어획강도가 높은 9개 근해어업의 허가정수를 하향 조정함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허가정수 : 38건 → 37건
  - 대형트롤어업의 허가정수 : 37건 → 34건

- 대형선망어업의 허가정수 : 29건 → 25건
- 근해채낚기어업의 허가정수 : 618건 → 588건
- 근해붕수망어업의 허가정수 : 55건 → 38건
- 근해자리돔들망어업의 허가정수 : 6건 → 3건
- 근해장어통발어업의 허가정수 : 40건 → 36건
- 근해문어단지어업의 허가정수 : 40건 → 32건
- 근해연승어업의 허가정수 : 479건 → 456건

#### 4.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고시 일부개정

##### ▣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 - 478, 2013. 02. 21

- 법제처에서 정비 권고한 대행기관의 비상 계획서 비치 여부 점검 삭제 사항을 수용

#### 5.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32호, 2013. 02. 27

- 국제해사기구(IMO)의 화재시험절차 코드 (FTP Code)를 수용하여 커튼류, 가구류 및 침구류 등 선박용 물건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 기준을 신설
- International Code for Application of Fire Test Procedures, Part 1~11편 중 Part 7(커튼류), 8(가구류), 9(침구류) 수용 (Res. MSC 307(88))
- (커튼류)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표준화재 시험(시험편, 시험절차 등), 세탁 및 풍화절차 등 화재시험 요건 및 판정기준 신설함
- (가구류) 외관검사, 치수 및 밀도검사, 화재 시험(시험편 등) 요건 및 판정기준(연소시간,

잔염시간 등) 신설함

- (침구류) 외관검사, 치수 및 밀도검사, 화재 시험(시험편 등) 요건 및 판정기준(시험편 발화 여부, 연기연소 발생 여부 등) 신설함

#### 6.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

##### ▣ 대통령령 제24410호, 2013. 03. 18

- 국내 해운업자가 해상운송과 관련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호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와 그 사업자의 선박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 (법률 제11598호, 2012. 12. 18. 공포, 2013. 3. 19. 시행)됨에 따라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을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최대주주인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7. 어선법 일부개정

##### ▣ 법률 제11754호, 2013. 04. 05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 허가를 원칙허용 인·허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어업행정의 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 명령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특별

-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며, 어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설비 등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어선의 건조·개조 허가를 원칙허용 인·허가 방식으로 전환(제8조제2항 신설)
    - 신청인이 하려는 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어선의 건조·개조 허가를 하도록 함
    - 적정하고 투명한 인·허가 기준을 정립하여 인·허가기준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 명령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의 지방이양(제10조제2항 신설)
    -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함
    - 권한의 이양으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분권이 촉진되고, 어업행정의 현장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설비 등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범위 확대(제25조제4항)
    -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설비 등에 대해서는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어선의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 외에 임시검사도 면제함
    -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설비 등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범위 확대로 우수정비

사업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어업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수수료 납부근거 마련 및 대행기관의 수수료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의무화(제39조제1항, 제39조제3항 신설)
  - 어선용품 등의 형식승인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근거를 명확히 하고, 총톤수의 측정·개측 및 검사업무의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그 결정내용 및 산정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수수료 산정의 공정성·투명성이 보장되어 수수료 산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8. 선박기관기준 일부개정

### ▣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3호, 2013. 04. 16

- 인화점 섭씨 60도를 넘는 기름화물을 운송하는 유조선의 선박평형수관장치를 기관실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9.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일부개정

### ▣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4호, 2013. 04. 16

- 이미 예비검사를 받은 선박용물건(예비검사 면제 대상)에 대하여 소유자가 요청 시 예비검사를 수행 가능토록 개선
- 「선박안전법」 개정(2010. 04. 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2010. 11. 18)으로 어선 관련 요건 삭제함
- 소유자가 요청 시 예비검사 수행 근거 마련(제2조제2항 단서)

- 예비검사 면제 대상도 소유자가 요청 시 예비검사를 수행
- 어선 관련 요건 삭제(제2조제2항 및 별표 1)
  - 총톤수 5톤 미만 연안어선의 기관 예비검사 완화 요건 및 어로용 원치 또는 그 부품에 대한 예비검사 대상 요건 삭제

## 10. '13년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제정

###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459, 2013. 04. 20

-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선 어업 경영수지 개선을 위함
- 감척대상 어업 변경
  - (중전) 근해, 연안 및 어획물운반업
    - ('13년) 근해, 연안 및 구획어업(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함)
- 감척대상 연안어업의 종류 지정방법
  - (중전) 시·도지사가 어업 및 업종간 분쟁해소 필요 업종의 어선 등은 별도의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13년) 시·도지사가 어업 및 업종간 분쟁해소 필요 업종의 어선 등은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 별도의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
- 어선 감척대상자 선정방법
  - (중전) 기초금액 대비 최저가 입찰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13년) 감척신청 어선 중 선정 및 어선의 규모를 우선 고려하여 선정하되, 연안어선의 경우 선정 및 어선의 규모에 따른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2개 이상의 허가를 가진 어업인에 대한 폐업 지원금 지원방법
  - (중전) 별도의 지원방법을 정하지 않고 입찰 신청 업종의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지원
    - ('13년) 감척대상어선의 주어업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 지급
- 감척어선의 어선어업 이외의 용도 매각
  - (중전) 양식장관리선, 화물선 등의 용도로 사용
    - ('13년) 양식장관리선, 화물선, 유선(遊船) 등의 용도로 사용, 다시 어선으로 허가가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
- 기타사항
  - 감척어선의 선박확인에 대한 사항을 강화하고 필요 시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에 따른 신청서 등 서식 개정

## 11.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 ▣ 대통령령 제24516호 2013. 04. 22

- 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또는 동력요트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모터보트·동력요트면허를 신설하여 해기사 면허에 대한 한정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총톤수 55톤 미만의 비상업용 동력요트의 경우에는 승무기준을 완화하여 6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가 선장 직무를, 6급 항해사 이상의 항해사가 기관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수상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총톤수 55톤 미만 모터보트·동력요트 한정

- 6급 해기사 면허 신설
- 연안수역 항해 비사업용 동력요트의 해기사 최저승무기준을 완화함

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선박의 범위를 완화함

- 수상레저기구의 분뇨오염방지설비 설치 등 (제14조제1항 및 제2항)

## 1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 대통령령 제24517호, 2013. 04. 22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협력 사업에 관련 국제협약의 국내이행에 필요한 사업,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사업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및 조사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을 국제협력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함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로서 승선정원이 16명 이상인 선박을 분뇨오염방지설비 설치 대상에 추가하고,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분뇨오염방지설비 설치 기준을 정함

-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선박 완화 등(제25조제1항제1호나목)

- 해양오염 위험성이 적은 국내항해에만 사용하는 유조부선 외의 부선에 대해서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 의무를 면제함

-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의 종류(제30조의2제1항 및 별표 20의2 신설)

-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을 산적(散積)화물선, 가스운반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일반화물선, 냉동화물운반선, 겸용선, 여객선 등 11개 선종(船種)으로 정함

-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선박 등(제30조의4 및 별표 20의4 신설)

-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선박을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시추선 및 플랫폼은 제외)으로 정하고,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 에너지효율검사의 세부기준 마련(제46조의2 신설)

- 에너지효율검사의 신청시기, 신청절차, 검사사항 및 검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에너지효율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 13.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 해양수산부령 제26호 2013. 05. 15

-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에너지효율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597호, 2012. 12. 18. 공포, 2013.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분뇨오염방지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선박해양

구 분	주 요 내 용
배출규제 해역 지정	○ 캐리비안 해역을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추가 지정 * 2014. 1. 1부터 시행
수상레저 기구 분뇨오 염방지설비 설치	○ 대변소를 설치해야 하는 승선정원 16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를 분뇨오염방지 설비 설치 대상에 추가하고 외부배출관 설치를 면제 *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를 받을 때까지 설치
선박해양 오염비상 계획서 비치대상	○ '12. 6. 1 법률 개정으로 부선의 선박해 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 대상 추가 - 기한 : 2013. 12. 1까지 ○ 금번 규칙 개정으로 국내항해에 사용 하는 400톤 이상 부선은 SOPEP 비치 면제
예비검사 시 외국 정부가 수행한 검사 일부 인정	○ 외국정부의 검사를 받아 수입되는 디젤 기관의 대기오염방지설비 예비검사 시 외국정부가 승인 및 발급한 질소산화물 배출 관련 기록부 및 검사증서를 제출 하면 질소산화물 배출시험 준비 면제
질소산화물 배출	○ '13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13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디젤기관으로 교체 하는 경우 기준 1을 적용할 수 있음 - '13. 1. 1 전에 제작된(기준 1로 검사) 디젤기관을 2013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할 수 있게 함
에너지효율 검사	○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 탄소량을 계산한 선박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 ○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SEEMP) : 선박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감시·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한 계획서

구 분	주 요 내 용		
* EEDI 및 SEEMP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구 분	건조·개조 선박	건조·개조 선박 외의 선박	
적용대상	총톤수 4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적용시기	'13. 1. 1. 이후 건조* 또는 개 조하는 선박	'13. 1. 1. 이후 IAPP 중서 상 정기검사나 중간검사 시부터	
EEDI 계산 및 허용 값 적용	계산 대상	11개 선종 <sup>1)</sup>	1×
	허용 값 적용	7개 선종 <sup>2)</sup>	
	추진 기관의 최소 출력 기준	○	×
SEEMP 비치 여부	○	○	
1) 산적화물선(散積貨物船), 가스운반선, 유조선, 컨테 이너선, 일반화물선, 냉동화물운반선, 겸용선, 여객선, 로로화물선(차량운반선), 로로화물선(로로화물수송 유니트), 로로여객선 2) 산적화물선(散積貨物船), 가스운반선, 유조선, 컨테 이너선, 일반화물선, 냉동화물운반선, 겸용선 * '13. 1. 1 이후 건조된 선박 정의 - '13. 1. 1 이후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 2013. 7. 1. 이후 용골이 거치되거나 그와 동등한 건조 단계 선박) - '15. 7. 1 이후 선박에 인도되는 선박 ○ 에너지효율검사대상 : EEDI 계산 대상 선박 및 SEEMP 비치 선박 * '13. 1. 1전에 건조 또는 개조에 착수한 선박은 2014. 5. 31까지 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폐기물배출 규제 강화	○ 음식물 찌꺼기 및 화물잔류물 외의 폐기물의 해양 배출 금지 ○ 폐기물관리계획서 비치대상이 100톤 이상 선박으로 확대		

#### 14.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 ▣ 법률 제11808호, 2013. 05. 22

- 해양수산부장관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병과하여 부과하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됨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위반에

다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아닌 선박소유자 및 안전점검사업자 등에 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대상을 축소하여 이중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경감함

대 상	현 행	개 선
형식승인을 받은 자,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두께측정대행업체,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과태료 부과 및 승인·지정·대행 취소 등 행정처분	승인·지정·대행 취소 등 행정처분

### 15.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 해양수산부령 제27호, 2013. 05. 23

- 수면비행선박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관리대행업 등록 시 법인의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결격사유 확인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서식을 개정함

### 16.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일부개정

####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33호, 2013. 05. 23

- 2012년 1월 1일 발효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과 2012년 7월 1일 발효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SOLAS)」 제2-2장(건조-방화, 화재탐지 및 소화)의 개정내용을 수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 종류를 추가함(유해성물질-자동차에 한정)
- 용기 및 포장의 검사를 위한 안전기준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17.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73호, 2013. 06. 20

- 예인선의 적정 선복량 유지를 위해 선령 15년 이상인 예인선의 내항 신규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나, 기존 예인선보다 저선령 예인선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제한(120% 미만)을 적용하지 아니함

### 1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 해양수산부령 제30호, 2013. 06. 24

- 선원들의 안전과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78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여야 하는 국제항해선박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

- 설정·조정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 등급별 세부 보안조치 사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항해선박이 아닌 선박의 수입 시 국제선박보안증서 비치 의무 면제(제14조제3호 신설)
    - 국제항해선박이 아닌 선박은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비치할 필요가 없음에도 지금까지 해당 선박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비치하도록 하여 선박수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국제항해선박이 아닌 선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로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비치 의무를 면제함
  - 선박이력기록부 재교부 신청 시 구비서류 합리화(제16조제2항제2호가목)
    - 선박이력기록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위한 재교부 신청 시 지금까지 선박이력기록부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선박을 운행하는 경우 선박이력기록부 원본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므로 선박이력기록부 기재사항 변경을 위하여 선박이력기록부 원본을 제출하면 해당 선박의 운항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선박이력기록부 재교부 신청 시 선박이력기록부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 선원대피처 설치대상 선박의 범위(제17조 제3항 및 별표 3의2 신설)
    -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여야 하는 국제항해선박의 범위를 해적위험해역을 항해하는 국제항해선박으로 규정하고, 해적위험해역의 범위를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해적에 의한 선박 피습의 50퍼센트 이상이 발생하는 소말리아

- 해역으로 명시함
- 선박식별번호 표시 위치 명시(제18조제2항 가목 및 나목)
    -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내부의 선박식별번호 표시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제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국제항해선박소유자의 선박식별번호 표시에 대한 혼란을 해소함
  - 보안등급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의 탄력적 적용 근거 마련(별표 1 비고 신설)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서의 보안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안등급에 따른 세부 조치내용의 일부 적용을 배제하거나 다른 보안등급에 따른 세부 조치내용을 일부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세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www.kst.or.kr) 제·개정 법률에 게재하였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고객의 현장애로기술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검사제도 등에 관련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인천테크노파크 갯벌타워 13층  
 선박안전기술공단 정부대행감사실  
 ☎ 032-260-2288~9 / Fax. 032-260-2235  
 e-mail : it@kst.or.kr  
 선박안전기술공단 기술연구실  
 ☎ 032-260-2153,56 / Fax. 032-260-2265  
 e-mail : tech@kst.or.kr